

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시행세칙

여수시도시공사 제정 2008.10.7. 세칙 제3호

제정 2017.11.17. 세칙 제4호

개정 2025.5.13. 세칙 제42호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회계규정 제10조 및 인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말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1. 재무관, 계약담당, 지출원, 징수관, 수입담당, 수입원, 채권채무관리담당, 분임채권채무 관리담당,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원,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취급원, 일상경비출납원
2. 총괄재산관리담당, 재산관리담당, 분임재산관리담당
3. 물품관리담당, 분임물품관리담당, 물품출납원, 분임물품출납원
4.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보조자
5. 제1호부터 제3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[제목개정 2025. 5. 13.]

제3조(재정보증) ① 직원이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되

는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제3조제2항에 따라,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1. 삭제 <2025. 5. 13.>

2. 삭제 <2025. 5. 13.>

제5조(검직)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의 업무를 검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, 이로써 검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<개정 2025. 5. 13.>

[제목개정 2025. 5. 13.]

제6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이사장은 회계관계직원이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,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

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증보험증권의 확보 및 보관) 이사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원으로 하여금 회계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3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 시행세칙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<제42호, 2025. 5. 13.>

이 세칙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